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검 사 직 무 대 리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범 계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종전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검찰청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와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간단한 구공판 사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공판 대상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불구속 송치사건’으로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청에 송부한 기록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실제 처리 사건 수 등 실무를 고려하여 일부 범죄유형 추가
-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외사무에서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삭제(안 제5조제3항제5호)
 -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은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자료회신을 요청하여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반복적인 통상 경미 업무이므로, 이를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 제외사무에서 삭제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추가
- 검사직무대리 처리불가 사무 등 정비(안 제5조제4항~제6항)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 등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배당받은 사건 중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유 정비(‘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6 ~ 3. 9)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불구속”을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불구속”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을 “인지(認知)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의해 송부받은 기록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은”을 “사건 또는 기록은”으로, “범죄에 관한 사건은”을 “죄명에 따른 범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절도, 업무방해, 사기, 모욕,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처리하는”을 “결정 또는 처리하는”으로, “사건”을 “사건 또는 기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4.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력(資力)조사촉탁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사건이”를 각각 “사건 또는 기록이”로 한다.

3. 사건의 결정 또는 기록의 처리를 위해 제4항에 의해 검사직무대리가 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직무 범위) ① <u>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u>	제5조(직무 범위) ① <u>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u>
1. <u>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고발사건</u>	1.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불구속 ---- <u>인지(認知)사건</u> ----- -----
2. <u>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u>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의해 송부받은 기록
3. <u>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u>	3. <u>제1호</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 <u>사건 또는 기록은</u> ----- ----- <u>죄명에 따</u> <u>른 범죄</u> -----.
1. <u>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u>	1. ----- ----- <u>절도, 업무방해, 사기, 모욕,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u>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의 범죄

<신 설>

<신 설>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 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자력(資力)조사촉탁,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신 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

15. -----

----- 결정 또는 처리하는 -----
-- 사건 또는 기록-----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4.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자력(資力)조사촉탁

④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

④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3. (생략)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

⑤ ----- 사건 또는 기록이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사건의 결정 또는 기록의 처리를 위해 제4항에 의해 검사직무대리가 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 사건 또는 기록이 -----

-----.

⑥ <u>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檢屍)를 하지 아니한다.</u> ⑦ (생 략)	<u><삭 제></u>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